

기초노령연금법등 연금개혁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글·강기정
국회의원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월 8만9천원의 연금지급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과 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 기금안정화 대책이 중심이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내년 2월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재정안정화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노인층에 대한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2003년 이후 17대 국회 들어와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지부진하던 상황이 었다. 그러던 차에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여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개혁이냐며 실망스런 소리가 있고, 한편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두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조치라며 그 의미를 크게 두고 있지 않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보통의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에 아무런 답도 못줄뿐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후소득보장의 국가책임을 비하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틀림없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하루 800억, 매년 30조원의 잠재 부채가 쌓여가고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현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0.39%씩 2008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금 급여액도 당초에는 현행 60%에서 40%까지 낮추는 제안도 있었으나 50%까지만 낮추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나 이미 가입해 있던 기간은 현행 60%수준의 급여율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득권은 보장하였다.

그간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가 40년동안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퇴직 전 소득의 6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인 저출산 구조에서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미래세대들이 치러야할 부담률이 급격히 높아 질 수밖에 없다. 가입자들에게 이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실망스런 안으로 비칠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비춰볼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계기로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도 포함되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부담하여 기초노령연금을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60세 이상이면 지급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저소득 노인에게 드리는 경로연금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하였는데 2008년 첫째 지급액은 약 9만원 수준이며, 2010년에는 10만원이 될 것이며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차 높아질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05.2)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생활실태 및 노후생활 준비에서 경제적 노후생활준비를 한 노인은 28.3%로 낮은

수준이고, 이상적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국가(40.9%), 스스로 마련(40.2%), 가족과 자녀(18.7%) 순으로 노후생활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노인들이 보는 '노인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관심사'는 노후소득지원(49.4%), 취업지원(23.6%), 요양보호 서비스(16.8%)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 수급률의 경우에도 30.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60%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가족과 함께 노후를 책임지는 첫단추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개혁안에는 그 동안 국민들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은 제도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 연금에 대해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여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출산 크레딧, 군인 크레딧을 도입하여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2003년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로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거쳐 왔다. 그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17회에 걸친 법안소위 논의, 그 외 전체 회의 등 많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지난 11월 30일에 민주당과 함께 국민연금법을 12월 7일에 민노당이 제안한 부대결의를 수용하여 민주·민노당과 우리당이 참여하여 기초노령연금법을 처리하였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사회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 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자꾸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KHA**